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223
------------	-----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다자녀 기준 및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8세로 완화함에 따라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방식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
-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 2023. 7. 10.)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별표2 개정
-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관계법령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법제심사 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법제심사	수정의견	반영	· 별지의 제명 수정의견 · 제5조 : 개정대상 추가 ·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5호 : 개정대상 문구 범위수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면자의 대상자란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을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 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 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제40조----- ----- ----- ----- ----- ----- ----- -----.
제5조(기능)주민자치회는 「지방자 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제5조(기능)-----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0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1. ~ 4. (생략)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 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5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생략)

1. ~ 4. (생략)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생략)

② (생략)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제39조제5항 관련)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0조제5항-----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제39조제5항 관련)

구 분	대상자	감면비율
면 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감면
감 면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 <u>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u> <u>3명 이상인 사람</u>	100분의 50
	○ 65세 이상의 고령자	100분의 20

구 분	대상자	감면비율
면 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감면
감 면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u>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u> <u>행복카드 소지자</u>	100분의 50
	○ 65세 이상의 고령자	100분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다자녀 가족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 완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
만으로 미첨부 (수강료 대비 감면액 1% 미만)
-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 세외수입	-1,067	-2,134	-2,134	-2,134	-2,134	-9,603
	소계(a)						
세출	○ 구비						
	소계(b)						
□ 총 비용(a-b)		-1,067	-1,067	-1,067	-1,067	-1,067	-9,603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

8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